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녹색산업혁신과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(법률 제18035호, '21. 10. 14. 시행)
됨에 따라 이에 법률,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(제7조)
- 나.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
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(안 제7조의2제2항 신설)
- 다. 인용조문 현행화(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7조의3, 제33조의4, 제55조
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예정)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를 “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의8제1항 중 “법 제7조의5제4항”을 “법 제7조의6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녹색환경지원센터”를 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(이하 “녹색환경지원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10조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의 제목 “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)”을 “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, 센터장 선임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0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

업자 신고증 사본

제33조의13 중 “항 각 호”를 “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14제1항제1호 중 “법 제16조의8제1항”을 “법 제16조의8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호 중 “제37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”을 “제37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) ①·② (생략)	제4조(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	③ ----- ----- -----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----- ----- ----- -----.
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8(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7조의 5제4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	제6조의8(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7조의 6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)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

4. (생략)

제7조의2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) (생략)

<신설>

제7조의3(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③ (생략)

제7조(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) -----

-----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(이하 “녹색환경지원센터”라 한다)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0조제5항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절차, 구성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의3(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0조의2제2항-----

-----.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환경 전문공사사업의 등록신청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

제33조의13(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)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·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(이하 “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·검증시스템(이하 “환경정보공개·검증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14(환경정보의 검증방법)

제30조(환경 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

제33조의13(환경 정보의 공개 방법
등) -----

----- 조 제2항-----

_____.

제33조의14(환경정보의 검증방법)

등)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법 제16조의8제1항</u>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.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제5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2. 삭제 3. <u>제37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·변경신고시 제출서류: 2014년 1월 1일</u> 4. <u>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: 2014년 1월 1일</u>	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16조의8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3. <u>제37조제1항·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제>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06